

#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13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찬열 · 이개호

이양수 · 유성엽 · 윤영일

정인화 · 김관영 · 이동섭

이종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있음.

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, 기본계획상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 중 “술”을 “전통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     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건전한 <u>술</u>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-----.         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전통주</u>-----          6. <u>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</u>  <u>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